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26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 강민국·강준현·강훈식

이정문 • 이강일 • 민병덕

윤한홍 · 김상훈 · 김재섭

이헌승 · 정동만 · 강명구

김 유·정일영·박선원

박지워 • 허성무 • 권향엽

권성동 · 김남근 · 유영하

허 영 · 이건태 의원

(239])

제안이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첨단전략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3년간 17조원) 등을 통해 첨 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 해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출 중심의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금 융기관들의 규제 준수 의무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

에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특히 첨단산업 지원의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함(안 제29조의7 신설).
- 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8 신설).
- 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해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9조의9 신설).
- 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10 신설).

- 마.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 용심의회를 둠(안 제29조의11 신설).
- 바.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0조).
- 사.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 지원시 한국산업은행이 병행하여 별도의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41조).
- 아.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관계 법령의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 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 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년간 ·자금지원은 5년간으로 하고, 운용 기간 종료 후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속하는 권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한다)및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을 "한다), 제29 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 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한 다.

제17조 중 "위원 및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을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7호 중 "금융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금융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금융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기금 ·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29조의3제2항 본문 중 "말하며,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의4제4항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장의3(제29조의7부터 제29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 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

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하며,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을 통칭하여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 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 3.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3.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 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 4.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 5.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 출연금
 - 6.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9조의9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

- 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 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가. 자금의 대출

- 나. 자산의 매수
-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 마. 사채의 인수
-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 사.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 2.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투자나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거래상대방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대출
- 4.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관련 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술 투자 등을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을 위한 제29조의9제2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부대비용
- 5.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6.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 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비용
- ③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 1. 국채 · 공채 등의 매입
-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 3. 그 밖에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
- ④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제 29조의2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9조의10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

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 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첨단전략산업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본정책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상정·의결을 거쳐야한다.

제40조 중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을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 한다.

제41조 중"제3장의2"를 "제3장의2 및 제3장의3(제29조의7에 따른 첨단 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시 한국산업은행이 병행하여 별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를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를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를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장의2"를 각각 "제3장의3"으

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및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위임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의7에 따른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속하는 권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

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아 개 정 제6조(정관) ① 한국산업은행의 제6조(정관)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 9. -----한 법률 :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 기금"이라 한다)및 제29조의2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 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 | 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 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에 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 관한 사항 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 의제) -----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u>위원, 제29조의6</u>에 따른 기 위원 및 제29조의6에 따른 기 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형법」이나 그 밖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위원----

제18조(업무) ① (생 략)

-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 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6. (생략)
- 7. 금융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 7. 금융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 워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업무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 무

<신 설>

③ (생략)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 (생 략)

제18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 1. ~ 6. (현행과 같음)
- 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 기금·첨단전략산업기금----
 - 8.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 한 자금의 출연
 - 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업무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 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 무
 - ③ (현행과 같음)
 - 재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지원을 말하며,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른다.
- 1. ~ 4. (생 략)
- ③ ~ ④(생 략)
-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 관리·운용 및 회계 등)
 - ① ~ ③ (생 략)
 - ④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 정기금의 회계와 <u>한국산업은행</u> 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u><</u>후단 신설>

⑤ · ⑥ (생 략) <u><신 설></u>

②					
<u>Ē</u>	하며,	이하	0]	장에	서
<u>같다</u>					
$1. \sim 4.$	(현행고	나 같음	-)		
$3 \sim 4$. — -	, _			. 3
제29조의4			_	기금	의
관리・운					
1 ~ 3	(현행· 	, _			
					 о
 행및 제2					
<u> </u>					<u>也</u>
<u> </u>					겨
우 기간선			•		
한국산업					
지 아니힌	_	<u> </u>	<u>" </u>	<u> </u>	<u>~1</u>
5 • 6		나 간으	-)		
	(1.0		/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신 설>

-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 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 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 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 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 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 (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과 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하며,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하며, 첨단전략산업기업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을 통칭하여 "첨단전략산업기업을 통기하여 "첨단전략산업기업을 통기하여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라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지법」제11조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 2.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 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 하는 업종
- 3.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 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 1.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 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의 차입금
 - 3.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 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 4.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수익및 그 밖의 수입금
 - 5.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

융회사 출연금

- 6.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9조의9제 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 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 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이 항 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 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 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 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 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 다.

<신 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① 첨 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 행이 관리·운용한다.
 -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

에 따른 신용공여

- 마. 사채의 인수
-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 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 채의 인수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 사.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지

 원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 2.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출자·투자나 제1호 가목부터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거래상 대방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필 요한 자금의 대출

- 4.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 비 구축 또는 관련 기술 확보 에 필요한 기술 투자 등을 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 전략산업관련기업을 위한 제 29조의9제2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 는 자금 및 부대비용
- 5.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6.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첨단

 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 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비용
- ③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 업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 조를 준용한다.
- <u>1. 국채 · 공채 등의 매입</u>
-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 3. 그 밖에 제29조의11에 따른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

법

-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및 제29조의2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아나한다.
- ⑤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 업지원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9조의10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⑥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 업지원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신 설>

천단전략산업기업등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 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 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 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조건으로 부과하거나 기금의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 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첨단 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 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 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 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 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 다)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첨단전략산업기 금의 기본정책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u>제</u> 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 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연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u>제3장의2</u>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감사 원법」또는「은행법」등 금융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회의 상정・의결을 거쳐야한다.
제	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u>제</u>
	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
	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
.1	
제	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특례)
	특례) <u>제3장의2 및 제3장의3(제2</u>
	<u>제3장의2 및 제3장의3(제2</u>
	<u>제3장의2 및 제3장의3(제2</u> 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
	<u>제3장의2 및 제3장의3(제2</u> 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 금의 자금지원시 한국산업은행 이 병행하여 별도의 자금을 지
	<u>제3장의2 및 제3장의3(제2</u> 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 금의 자금지원시 한국산업은행
	<u>제3장의2 및 제3장의3(제2</u> 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 금의 자금지원시 한국산업은행 이 병행하여 별도의 자금을 지
	<u>제3장의2 및 제3장의3(제2</u> 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 금의 자금지원시 한국산업은행 이 병행하여 별도의 자금을 지
	<u>제3장의2 및 제3장의3(제2</u> 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 금의 자금지원시 한국산업은행 이 병행하여 별도의 자금을 지
	<u>제3장의2 및 제3장의3(제2</u> 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 금의 자금지원시 한국산업은행 이 병행하여 별도의 자금을 지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저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 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상법」제34 4조의3제2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 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 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민법」제450조에 따른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
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
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
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②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
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
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및 제
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
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지
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u>제3장의2</u>
및 제3장의3
<u>제3장의2 및 제3장의3</u>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
는 경우 및 첨단전략산업기업
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
의 위임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
사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